

연수교육 면제처리 규정 및 절차

I

관련 근거 법령 :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

약사법 시행규칙

제5조의2(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) ①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

1.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
2. 군 복무 중인 사람
3.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
4. 대학원 재학생
5. 해외체류·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
6. 법 제3조 및 법 제4조에 따라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(면허를 받은 연도 및 다음 연도만 해당한다)
7.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② 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약사·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신청인이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,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약사·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.

Ⅱ 연수교육 면제 대상

※ 「2021년도 약사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 업무지침」 18페이지 참조

- (제1호)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
 - 행정기관, 보건소, 연구소, 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,
 - 의약품 제조·수출입·유통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의약품 제조·품질·안전·도매관리 업무(약사의 면허범위 내 관리약사 업무)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

→ (예시)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공직자, ○○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마케팅 담당자
- (제2호) 군 복무 중인 사람
 - 현재 군에 의무 복무중인 사병(사회대체복무자 포함) 및 부사관 이상의 군인

→ (예시) 국군 수도병원에 복무중인 약사면허를 소지한 병장 홍길동
- (제3호)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
 - (예시) ○○약학대학 교수, 강사 등
- (제4호) 대학원 재학생
 - 대학원 재학생으로 연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

→ (예시) 약사 양성대학의 대학원 재학생

- 다만, 약사가 조제·판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해당 면허 외의 대학

원에 진학한 경우*,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, 연수교육 면제 불인정

* (예시) 약사가 파트타임으로 약국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면서 경영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연수교육 면제 불인정

- (제5호) 해외체류·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
 -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의약품 조제·판매·제조·품질·안전·도매 관리 업무(약사의 면허범위 내 관리약사 업무)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
 - (예시) 휴·폐업, 휴직자, 퇴직자, 해외체류자, 관리약사 업무 외 보직으로 변경된 자 등
- (제6호) 법 제3조 및 법 제4조에 따라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 (면허를 받은 연도 및 다음 연도만 해당한다)
 -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지 2년 이내의 자(면허 재교부 받은 자 제외)
- (제7호)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 - (예시)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(원) 교육을 받은 경우, 질병 등으로 당해연도 연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

✔ 연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

- 면허범위 내 조제·판매 업무에 종사하거나 의약품 관련 업체에 관리약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에 주·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,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
- 논문지도학기 과정*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(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)이 되는 경우,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
- 면제 대상자의 신분이 당해연도의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, 당해연도

연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

(예) 군대에서 일반사병(사회대체복무도 포함)으로 '20.8월 입대 후 '22.1월 제대한 경우, '20년 연수교육 대상, '21년 연수교육 면제, '22년 연수교육 대상

-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, 면허 신고 시 연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

(예) 1월과 2월에 군대 일반사병의 신분이었으나, 3월부터 8월까지 대학원 재학생 신분이라면 연수교육 면제)

- 6개월 미만 여부는 근무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

(예) '20.3.17~'20.9.16 : 6개월 미만

'20.2.2~'20.8.2 : 6개월 이상

'20.4.2~'20.10.3 : 6개월 이상

'20.1.1~'20.3.25, '20.6.5~'20.9.10 : 6개월 이상

※ 비상근근무자(주 1일~3일 근무 등)는 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 최초 근무일부터 최종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('21.1.1.(최초근무일)~'21.7.2.일(최종근무일)까지 주 1일 근무자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근무)

- 출산·육아 휴직 연도의 연수교육과 업무 복귀 시 복귀한 연도의 연수교육은 휴직 및 복귀 시점에 따라 결정

(예1) '20.6.1일 출산 후 '20.9.1일 복직한 경우는 '20년도 연수교육 대상

(예2) '20.10.1일 출산 후 출산휴가('20.10.1~'21.12.30) 및 육아휴직('21.1.1~'21.12.30)하고 '21.12.21에 복직 한 경우, '20년도 교육 대상, '21년도 면제

(예3) '20.5.1일 출산 후 퇴사하고 이후 다른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, '20년도 연수교육 면제

(예4) '20.3.10일 출산 후 퇴사하고 다른 요양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·수출입·유통업체에 취업하여 합산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수교육 대상

(예5) '20.12.1일 출산 후 2년 육아휴직('21.3.1~'23.2.28), '23.3.1에 복직을 한 경우, '20년도 교육 대상 '21년도와 '22년도 면제, '23년도 교육 대상

- 의약품 제조·수출입·유통 업체 관리약사의 경우 보직을 유지하는 기간만 산정

(예) '20.1.1~20.6.29까지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'20.7.1일 인사 이동으로 연구소로 발령난 경우 '20년도 교육 면제

III

보건복지부장관의 연수교육 면제 인정 절차

※ 「2021년도 약사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 업무지침」 21페이지 참조

- 약사가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, “연수교육 면제 신청서(별지 제4호의3 서식)” 작성 → 대한약사회장에게 제출 (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항)

【첨부서류】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예시)

면제 (제1항)	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(1호)	⇒ 휴직자 :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(휴직기간 명시) ⇒ 퇴직자 :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⇒ 일반·행정기관/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: 재직증명서
	군 복무 종인자(2호)	⇒ 병적증명서, 군입영사실확인서, 현역복무 확인서
	학교에 재직 중인 자(3호)	⇒ 교수 및 연구원 : 재직증명서(비고란에 직위/직책 명시)
	약학대학 대학원 재학생(4호)	⇒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
	휴업, 폐업, 해외체류 및 보직변경 등으로 6개월 이상 의약품 조제·판매·관리 업무 미종사자(5호)	⇒ 해외체류 : 출입국사실확인서 ⇒ 휴·폐업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휴·폐업 사실 증명원 ⇒ 업무 변경 : 재직증명서(비고란에 관리약사 아님을 명시)
	신규 면허취득자(6호)	⇒ 면허증 사본
	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(7호)	⇒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	약국, 의료기관의 폐업·이전 등으로 사실증명이 곤란한 경우	⇒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기 근무이력 조회 결과 사본

※ 2020년도 연수교육 면제처리 완료자에 대해서는 2021년도 면허 일괄 신고 시 연수교육 면제 증명서류 제출 면제. 다만, 2021년도 면허 일괄 신고 시행 시까지 2020년도 연수교육 면제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면제 대상자는 연수교육 면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- 연수교육 면제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,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 함

○ 연수교육 면제 신청인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(면제사유)에 해당하는 경우, 대한약사회장 → 신청인에게 “연수교육 면제 확인서(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조의4 서식)” 교부*

* 연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 여부는 「면허신고시스템」에서 확인 가능

- (처리기간) 5일

-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른 “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”은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 분류

※ 유권해석에 연관된 소속 약사에게도 면제가 가능한 사유를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안내 및 추가 신청 시 면제 인정 집행